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5.] [총리령 제1992호, 2024. 11. 15.,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영양사, 식품·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책임자·품질보증책임자·시험검사원 및 위생용품제조업의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등 4개의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1992호(2024.11.15)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법 제17조제1항"을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으로, "위생교육에 참석하기"를 "위생교육을 받기"로, "배부"를 "제공"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